

위해사례분석을 통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A Method to Develop Security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n Dangerous Case

유형 창* · 김태민**

<목 차>

I. 서론	IV.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II. 경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테러리즘과 경호 위해사례분석	

<요 약>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추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경호, 위해사례, 테러, 공경호, 민간경호

* 이 연구 결과물은 2008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부 교수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경호학 박사

I. 서 론

21세기의 세계는 국제화로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쟁의 위협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테러위협은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다양한 동기와 원인으로 귀한 인간의 목숨을 무차별 앗아가는 테러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국정원, 2008).

사이버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한국의 5대 범죄¹⁾는 521,142명 발생하여 385,704명이 검거되는 등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²⁾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화,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테러와 범죄대응을 위해 국정원, 대통령실 경호처, 경찰 등의 시큐리티 기관들은 그들의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경비업체는 치안 서비스 공급 주체인 경찰과 함께 상호 역할 분담을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공경호의 대표적 기관인 대통령실 경호처는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었고, 2008년 대통령경호실이 폐지되고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간경호는 1976년 ‘경비업법’(제정법명은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된 이후 2007년말 기준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된 경비업체는 2,834개(신변보호업무는 416개), 경비원은 135,400명(신변보호요원은 11,760명)이라는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1995년 경비지도사제도 신설과 신변보호업무 추가, 1999년 ‘경비업법’으로 법명 개정 등 2008년 2월까지 13차에 걸친 법제도적 정비·보완으로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망한 가운데, 2006년 5월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5.31지방선거 유세 중 보호관찰 대상인 전과8범 지충호로부터 테러를 당한 피습사건은 한국 경호제도의 미비는 물론 국가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

1)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 2004년 455,840명, 2005년 487,847명, 2006년 489,575명, 2007년 521,14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국내·외의 학위논문, 학술지 및 연구논문, 일간지, 단행본,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해 고찰하였고, 경호위해 사례 증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시큐리티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와 법제처의 경호관계법을 인용하였고 경호관계기관 및 민간경호업체, 경찰청 실무자의 의견을 인터뷰하고 참고하여 연구를 보충하였다.

본 연구는 경호 위해사례 중 박근혜 테러사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특정인(정치인) 테러에 국한하여 사건을 분석한다는 것과 사건의 전개과정 등은 일간지 내용을 중심으로 참고한바 연구의 한계성이 있어 분석방법을 경호방법론적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경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경호경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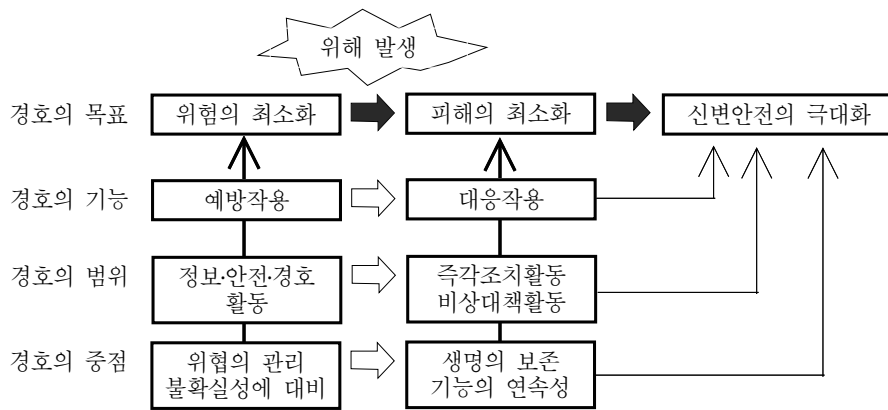
실질적 의미에서 경호 개념은 학문적 측면에서의 접근한 개념으로 경호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호대상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위해 및 위협 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함은 물론 근접에서 경호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 경호 개념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³⁾

한국 민간경호의 법적근거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경호실법이라는 법명으로 제정(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 1507호)된 이래 2005년 3월 10일 개정 전까지는 경호의 개념을 “호위(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와 “경비(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이 두 요소를 경호의 기본요소로 정의하고 있었다.

‘경호’와 ‘경비’의 용어사용에 관해 보편적 인식의 개념에서 접근하자면 관련업계에서는 신변보호활동 및 호위적 성격이 주(主)가 되는 업무수행활동을 ‘경호’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⁴⁾ 경호대상자의 생명 또는 재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설 및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활동을 ‘경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그러므로 민간경호란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와 위험요소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시설 및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제반 안전서비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민, 2005).



자료 : 이두석(2008). 라빈수상 위해사건 분석을 통한 경호적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15: 214.

<그림2-1> 경호의 구성

2. 경호경비의 주체

1) 대통령실 경호처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기관인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① 대통령과 그 가족 ②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4) 실제적으로 신변보호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분석해 보면 대다수 업체들이 “경호업무”로 표기(극소수는 신변보호업무)하고 있으며, 전국 경호·경비관련 학교의 학과명에서도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경호학과”로 명명하고 있다(김태민, 2005).

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⑤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⑥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경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호처는 기획실, 경호본부, 안전본부, 지원본부로 편성되며 경호전문교육기관을 위한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두고 있다.

<표 2-1> 경호처의 조직과 주요 기능

구 분	주요 기능
기획실	-국회, 예산, 공보 등 대외업무 -인사, 조직, 정원관리, 행정법무 업무
경호본부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경호 업무 -방한하는 외국정상·행정수반 및 전직대통령 등 요인에 대한 경호
안전본부	-국내·외 경호관련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 -행사장 안전대책 강구 및 청와대 주변 대테러 업무
지원본부	-행정업무, 시설관리, 경호차량운행 등 경호행사 지원업무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및 청와대 정보통신 업무
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관리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경호처 직원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호안전 전문교육 -경호안전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자료 : 대통령실 경호처(<http://www.pss.go.kr>), 2008.

2) 경찰과 민간경호

한국의 민간경호원은 2001년을 기점으로 경찰관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여 현재(2007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민간경호업체는 <표 2-2>와 같이 2,834개에 이르며, 민간경호원 수는 135,400명에 달하고 있다. 경찰 인력은 2008년 3월 현재 96,324명에 이르고 있다.

<표 2-2> 민간경호업체·경호원과 경찰관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업체	1,882	1,929	2,051	2,163	2,322	2,515	2,671	2,834
경비원	81,618	97,117	107,963	104,872	105,697	122,327	127,620	135,400
경찰관	90,670	90,819	91,592	92,165	93,271	95,336	95,613	96,324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자료의 재구성.

3. 경호의 원칙과 방법

경호의 특성상 위태상황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경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방법적인 요소가 바로 고도로 훈련된 경호전문가의 몸을 수단으로 한 경호기법인 것이다(이상철, 1997). 경호의 원리와 기법에는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예방경호의 원칙, 자연방벽 효과의 원리,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 원리, 근접경호기법, 우발상황 발생 시 SCE원칙(경고·방호·대피), 축소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등 많은 경호기법들이 있다.

경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철저한 현장답사와 위해 및 취약요소분석, 위해요소제거활동,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한 완벽한 확보와 출입통제대책이 망라된 예방적 활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경호는 경호대상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의 여러 원칙 중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을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다. 경호의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은 일반적으로 공경호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민간경호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사건의 분석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경호의 일반원칙은 3중경호의 원칙, 두뇌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은밀경호의 원칙으로 제시된다.

3중경호(중첩경호)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3중의 안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경호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중심부 내부를 안전지역으로 정하여 완벽한 통제를 목표로 근접경호요원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 내곽지역을 경비구역으로 정하고 부분적 통제를 위하여 근접경호요원 또는 지원요원을 근무케 하며, 끝으로 행사장의 외곽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인적·물적·자연적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경계를 실시해야 한다(김두현, 2002).

경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방패막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도 중요하지만 신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두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뇌경호의 원칙이다. 경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사전에 예방 및 제거하고 최소화해야 하며, 우발상황 발생 시 경호원은 고도의 상황 분석과 신속하고 순간적인 판단과 같은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방어경호의 원칙은 경호임무 수행시 공격이 아닌 방어의 개념으로서, 경호대상자에게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방어 위주의 엄호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임무수행시 통상 정적인 상황에서 경호대상자의 심신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경호본연의 임무가 수행 되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경호원은 항상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켜야 하고, 우발상황 발생 시 경호대상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혼란 없이 다음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호의 특별원칙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을 말한다.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은 경호원이 자기가 맡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경호원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책임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경호의 목표물인 경호대상자에게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격시켜 놓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단일 통로를 설정함으로써 근무운용의 원활함과 안전의 확보를 위한 대비책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출입구와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기도하는 자에게 접근의 용이성을 부여하는 취약성을 갖기 때문에, 참석자를 포함한 일체의 접근자는 경호원으로부터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절차를 거쳐 접근토록 하여야 한다.

자기희생의 원칙이란 경호대상자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라도 평소의 반복된 훈련과 고강도의 정신력으로 단련된 근무자의 조건반사적 희생을 통하여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호업무를 합리적인 수단과 과학적 기법을 통한 고도의 반복훈련과 지식과 소양의 연마가 완벽하게 학습되어져야한다.

위해기도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안전은 예리한 경계심과 냉철한 판단력과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호원들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경호원 개개인의 경호기법의 연마와 우발상황에 대한 상황발생시 행동절차에 대한 자기암시가 구상되어짐으로서 경호팀단위의 경호기법으로 계획되고 숙달되어지게 될 수 있다.

<표 2-3> 경호의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원칙		내용
일반 원칙	3중경호 (중첩경호)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3중의 안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용
	두뇌경호	경호실시에서 두뇌의 역할이 지대하고 중요
	방어경호	경호대상자에게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방어 위주의 엄호 행동이 요구
	은밀경호	정적인 상황에서 은밀하게 행동
특별 원칙	자기담당구역책임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는 근무자 본인만이 책임진다.
	목표물 보존	경호대상자를 위해기도 예상 및 가능자로부터 이격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또는 통로는 가급적 단일화 하여야한다
	자기희생	자신을 던져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반드시 확보

자료 : 김두현(1996). 경호학개론. 서울: 쟁기, pp.56-63. 재구성

III. 테러리즘과 경호 위해사례분석

1. 테러와 뉴테러리즘

테러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이념적) 폭력’으로 정의되나 이념대립, 종교·민족갈등,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그것은 용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과 ‘폭력’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테러행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규탄 받을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자유전사들의 영웅적 행위로 칭송되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테러’의 개념정의는 없으나 학자들의 주장과 우방국 관계기관 등이 정의한 내용을 보면 통상 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 ②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 ③ 심리적인 충격이나 공포심 조성 ④ 소기의 목표나 요구사항 관철 노력 ⑤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자국의 국익’을 고려한다는 것이다(국가정보원, 2008).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요소와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테러’를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테러는 대상이 국가 중요시설과 같은 소위 Hard-Target에서 백화점, 지하철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보안시설이 취약한 소위 Soft-Target으로 변화되고

있고, 주제와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또한 테러 조직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그물망 조직으로 연결되어 조직을 와해시키기 어렵고, 테러의 수단은 전통적인 무력에 더하여 화생방 테러와 사이버 테러까지 다중적,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뉴테러리즘이라 한다.

국가정보원(2001)은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① 요구조건공격주체 불명으로 추적 곤란 ②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 ③ 그물망 조직으로 무력화 곤란 ④ 테러의 긴박성으로 대처시간 부족 ⑤ 테러 장비가 따로 없어 방어 지난(至難) ⑥ 대량 살상무기 사용으로 새로운 대처방식 필요 ⑦ 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확산이 용이 ⑧ 사건 대형화로 정치적 부담 증대 ⑨ 중산층인텔리를 충원, 테러의 지능화로 요약하고 있다.

2. 주요 경호 위해사례 고찰

위해란 위협과 손해의 합성어로 생명이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 또는 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성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국민생활센터 위해정보보고서에서는 위해란 “물건의 사용에 의해 인체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카메이 소토아키, 1999). 즉 위해란 “위험인물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신체를 상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격행위”라고 할 수 있다(이두석, 2008). 국내·외 요인에 대한 주요 위해 사례는 <표 2-4>, <표 2-5>와 같이 정리한다.

<표 2-4> 국내 요인의 주요 위해 사례

사건명	일시	장소	내용
이회창 대선후보 계란 투척	2007. 11.13	대구 서문시장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대구 서문시장 방문과정에서 이모(32)씨가 계란 투척
김영삼 대통령 계란, 페인트 투척	1999. 6.3. 10:50	김포공항 2청사 귀빈주차장	김영삼 前대통령이 일본방문을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환송 나온 인원 100여명과 악수를 하며 들어가는 도중, 환송인파에 끼어있던 박의정(당시 72세)이 유성페인트가 들어있는 계란을 투척
정원식 국무총리 밀가루 피습	1991. 6.3. 18:30	외국어대학교 (이문동) 교육대학원 418호실 앞	정원식 총리서리가 서울 외국어대 교육대학원에서 특강을 끝내고 나오다 학부 학생들에 의해 계란 및 밀가루 세례와 함께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는 등 집단폭행
육영수여사 피살	1974. 8.15	광복절기념식장	육영수 여사, 광복절기념식장서 총련계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해 피살
김구 피살	1949. 6.26	경교장2층 거실	독립운동가 김구,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피살

자료 : 대통령실 경호처(<http://www.pss.go.kr>); 동아일보(2007). “이회창측 경호강화 골몰”. 11.14. 재구성

<표 2-5> 국외 요인의 주요 위해 사례

사건명	일시	장소	내용
파키스탄 전총리 암살	2007. 12.27	파키스탄 북부 '라왈핀디' 市	'부토' 前 총리의 親美성향에 불만을 품은 파키스탄내 이슬람 과격세력이 배후로 추정(테러단체들은 '부토' 前 총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암살 위협)되며, 총선 유세 후 차량 선루프를 통해 환영 인파에 답례하며 현장을 떠날 때, 범인이 차량 뒤에서 접근 하며 총기를 발사(2발이 목과 가슴 명중)하고 자폭테러 자행(사망 20여명, 부상 40여명)
바티칸교황 피습	2007. 6.6	로마 베드로 대성당 광장	약 35,000명의 군중이 운집한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무개차가 지나가는 순간 범인이 바리케이드를 뛰어 넘으며 교황을 덮치려고 시도했으나, 경호요원들이 제지한 사건. 범인(독일계 정신질환자 청년, 27세)은 체포 이후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 하여 정신 감정 등을 실시했으며,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뛰어난 점으로 보아 관심유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분석
UN사무총장 테러	2007. 3.22	이라크 총리 공관	'이라크 이슬람 국가' 테러단체가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이라크 '말리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 도중 로켓포탄이 공관 인근에 떨어져 폭발, 건물에 충격이 가해지고 경비원 2명이 사망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	1981. 3.30 14:20	워싱턴 힐튼호텔 앞	힐튼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대통령으로부터 5~6m 떨어져 있던 범인 힝클리가 로프 차단선 뒤에서 2초 동안 권총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 6발을 모두 발사하여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2명)을 맞춘 사건 * 총성이후 10초 만에 대통령이 현장을 벗어나는 신속성을 발휘

자료 : 대통령실 경호처(<http://www.pss.go.kr>), 재구성

3. 박근혜 위해사례 분석

1) 사건의 경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위하는 일반적인 유세과정에서 발생했다. 2006년 5월 20일 청중들과 어떠한 경계도 없이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만났고, 위협을 가한 지씨는 한나라당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해 청중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였다. 다음은 경찰이 밝힌 사건의 시간대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① 19:03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현장(신촌 현대백화점 앞) 도착
- ② 19:20 박근혜 대표 유세현장 도착
- ③ 19:35:42~19:38:21 112 최초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신고내용 : 박 대표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을 잡아둬. 얼굴에 면도칼로 큰 부상을 입었음)
- ④ 19:38 2차 신고
- ⑤ 19:38~19:44 2차 신고 포함 모두 7회 신고 접수

- ⑥ 19:45 상황실장 서대문서장에게 보고
- ⑦ 19:47 신촌지구대 순찰차 18호 탑승 경찰관 2명 현장 도착(GPS 기록)
- ⑧ 19:48 순찰차 17호 현장도착(이어 19:54 순찰차 16호 현장도착)
- ⑨ 19:48 순찰차 17호 탑승 경관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피의자 2명 신병인수
- ⑩ 19:56 피의자 서대문서 도착(CCTV 확인)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f=total&n=200605210125>, 동아일보 2006.5.21)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호대상자 도착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박 대표의 지원을 받아 유세전을 펴기로 했다.

박 대표는 오후 7시 10분 경 유세장에서 마포구 동교동 방향으로 150m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에 도착했다.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내린 박 대표는 당직자, 경호팀 등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백화점 유세차량 쪽으로 갔다.

박 대표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막 연설을 마친 오 후보는 “박 대표가 지금 도착하셨습니다.”고 청중들에게 알렸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대표는 백화점 옆을 지나면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청중들과 악수를 나눴다.

(2) 위해상황 예견

이 때 청중 사이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박근혜가 뭐가 좋다고 손뼉치고 난리냐. 한나라당이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 남자는 나중에 유세 차량 단상의 마이크 지지대를 집어 던진 박모(54) 씨로 확인됐다.

박 대표의 주변에 있던 경호원과 당직자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박 대표는 청중들 사이를 지나 유세 차량 오른편에 도착했다. 이때가 오후 7시 15분경이었다.

박 대표는 청중과 당원들에게 인사하며 오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유세 차량 계단으로 향했다. 그가 첫 계단 위로 올라서자 누군가 악수를 청했다. 박 대표는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손은 내밀어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3) 위해상황 발생

박 대표가 두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모(50) 씨가 청중과 경호원 사이로 오른손을 내밀어 박 대표의 오른쪽 얼굴에 커트칼을 휘둘렀다. 이 때 지씨는 박 대표를 향해 “죽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 대표는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며 왼손

으로 오른쪽 뺨을 감쌌다. 눈 깜작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 대표가 주저앉으려는 모습을 본 경호원과 당원들의 얼굴엔 당혹감이 역력했다. 피습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한꺼번에 지씨를 덮쳐 제압했다.

지씨는 제압당하는 순간 “박근혜가 흑심이 많아서 찼다. 박근혜가 나와서 해준 것이 뭐 있냐”며 “(박 대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고함을 질렀다.

당원들이 지씨를 유세 차량 앞쪽의 시계탑 쪽으로 끌고 가는 동안 일부 흥분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지씨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이때 한 당직자는 지씨를 향해 “저 사람이 지난해에도 연설 중이던 광성문 의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말했다.

지 씨가 박 대표에게 흥기를 휘두른 때와 거의 동시에 유세 차량 바로 앞에서 박 씨가 차량 위에 있던 마이크 지지대를 들어 청중들 쪽으로 집어 던졌다. 만취상태였던 그는 “박근혜를 죽여라.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고 소리쳤다. 박 씨도 주변에 있던 당원들에게 곧바로 제압돼 시계탑 쪽으로 끌려갔다.

지씨와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8시경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일부 목격자들은 “지씨와 박씨 외에도 5, 6명이 박 대표를 비난하다 달아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직자를 포함한 대다수 목격자들은 “달아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4) 병원 후송

박 대표는 오후 7시25분경 오 후보 등의 도움을 받으며 유세 차량 옆에서 대기 중이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인근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향했다. 오후 7시 40분경 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박 대표는 오후 9시 15분경부터 11시10분경까지 상처 부위를 60바늘이나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n=200605210111>, 동아일보 2006. 5. 21)

2) 사건의 결과 및 평가

(1) 범죄자 처벌

박근혜 피습 사건의 범인 지씨는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 미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살인미수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박근혜 피습 사건을 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림에 따라 열린우리당 김교홍 의원은 지씨가 지역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왔다는 이유로 의심

을 산 누명이 해소되었다.

(2) 경찰의 초동조치 지적

공경호의 적극적인 경호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대응이 요구되는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이 일어난 뒤 30분 뒤에서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은 최초 신고 뒤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표가 피습된 시점으로부터 27분 뒤다. 경찰청은 박 대표가 습격당할 당시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없었으며 최초 도착한 순찰차의 출동장소가 현장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교통혼잡으로 112 최초 신고 뒤 12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f=total&&n=200605210125>, 동아일보 2007. 5. 21).

다음은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에 관한 기사이다.

“한나라당은 경찰의 초동 대응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교통경찰 1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형사 2명이 뒤늦게 와 피의자들을 연행해 갔다”는 것이다.

당 정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사고 현장에 서대문서 정보과 형사가 왔다가 교통경찰 추가 배치만 지시하고 서대문서로 복귀했다. 경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찰 인력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찰이 당초 범인 지모 씨가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박 대표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동영상을 보면 지 씨는 오른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찰 설명에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누장 출동 지적에 대해 “심리적 시간이 길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당일인 20일 오후 7시 35분에 112신고가 들어왔고, 3분 뒤인 7시 38분 접수를 마친 서대문서 상황실이 신촌지구대에 출동을 지시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게 9분 뒤인 7시 47분이었다는 것이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n=200605220114>, 동아일보 2007. 5. 21)

(3) 경호제도의 개선 논의

사건 이후 국내 대선관련 경호 강화책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요인경호법안이 발의되었고, 대통령경호실에서 대선후보를 경호하자는 대통령경호실법의 개정도 발의하였으나 계류되는 등 요인에 대한 법제도적 경호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은 법제도적 경호 강화방안에 관한 기사내용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중요 정치인이나 각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대선후보를 경호 대상으로 하는 요인경호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경호실에서 대선후보를 경호하는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돼 있다. 전문 경호팀을 꾸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박 전 대표와는 달리 비(非)한나라당 진영의 대선 예비주자들은 전담 경호 인력 없이 수행비서만 대동하고 대중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은 “경호 인력이 전혀 없다. 경호를 해 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705210121>, 동아일보 2007. 5. 21)

(4) 경호운영의 강화 대책 논의

박근혜 위해사건 이후 대선주자에 대한 경호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운영적인 경호강화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사건 발생 후 운영적으로 경호 강화가 된 최근의 기사내용이다.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주위에는 현재 17명의 경찰 인력이 경호 중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말에는 9명이 추가로 배치돼, 경호 인력은 모두 26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모두 경호 경력 2년 이상, 공인 무도 3단 이상인 경찰관들로 이 후보의 모든 일정에 맞춰 수행 경호와 자택 경호를 병행한다.

그러나 정보 보안을 이유로 대부분의 근접 경호는 기존의 사설 경호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위협을 당한 이회창 후보의 경우, 무소속인 만큼 현재로서는 경찰의 공식 경호를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테러위협에 취약하다. 무소속 후보는 대선후보로 공식 등록하는 오는 25~26일 이후라야 비로소 경찰의 경호 인력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측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후보 경호팀장을 지낸 유의수씨 등 자원봉사자 6명으로 자체 경호팀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경찰 측에 경호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측 경호팀은 현재 경찰 12명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달 15일 후보 확정 이후 부인 민혜경씨에도 4명의 경호팀이 배치된 상태다. 애초 20명 가량이 배치됐으나 정 후보측이 “지나친 경호는 일반인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다”며 오히려 감원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정 후보측은 후보 등록 이후 거리 유세 등이 본격화되면 경호팀을 8명 가량 증원하는 한편 근접 경호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도 현재 10명 내외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돼 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역시 7명의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711130454>, 동아일보 2007. 11. 13)

(5) 정치테러 시각

본 사건을 정치테러로 보는 견해가 있다. 광복직후인 1945년 12월 송진우 피살 사건, 1947년 7월 여운형 선생 피살사건, 1949년 6월 김구선생 피살사건, 1969년 6월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 자동차 초산 살포사건, 1973년 8월 야당지도자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8월 육영수여사 피살사건, 1979년 10월 박정희대통령 피살사건, 1999년 6월 김영삼 전대통령 달걀투척사건 등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던 정치 테러가 재현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1990년대 정치인 피습 사건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달걀이나 밀가루 세례를 통해 모욕을 주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테러가 정치문화를 20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n=200605220102>, 동아일보 2006. 5. 22)

정치테러는 일반 폭력에 비해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법원이 내린 형량은 높지 않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1957년 5월25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무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연 시국강연회에서 깡패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폭력배를 진두지휘한 혐의로 '정치주먹' 유지광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88~1989년에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7년 4월 일어난 정치폭력의 상징적 사건인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방해 사건'(일명 용팔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용남씨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 사건을 배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택돈 전 국회의원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은 1991년 대학 강의를 하던 정원식 국무총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대학생 정모씨 등 7명 중 2명에게 징역 2년을, 4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을, 1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듬해인 1992년 이들 가운데 정모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정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해외출장길에 김포공항에서 페인트를 넣은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f=total&n=200605200247>, 동아일보 2006. 5. 20)

3) 경호방법론적 사건의 분석

본 연구에서 경호방법론적 사건의 분석이란 고유의 경호기법에 입각한 원칙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여러 원칙의 적용에 비추어 사건을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1) 사전예방경호 미비

사전예방경호란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경호협조와 경호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시로 편성된 경호단위(Task Forces Team)를 행사지역에 사전에 파견하여 제반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가용한 전 경호요원을 운용하여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작용을 의미한다(김두현, 1996).

예방적 차원에서 경호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출동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선발경호(Advance Security)라고 한다. 미국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의 선발 경호에 대한 정의는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경호 협조 및 준비를 하고 특히 경호 정보 수집에 역점을 둔다(美 CID, 1978)”라고 설명하고 있다(양재열, 1995).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선발경호와 근접경호가 시스템화 된 공경호와는 달리 민간경호에서는 선발경호 및 예방경호를 선행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민간경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은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의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최소한의 경호원이 배치되기 마련이고, 비용 등의 문제로 선발경호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특별한 법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응적 측면에서도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박근혜 위해사건에서도 선거 기간 동안 공경호의 지원 없이 대통령경호실(현 경호처) 출신과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3명의 사설경호팀이 밀착 경호를 수행하다 보니 사전예방경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2) 근접경호의 원칙 미준수

통상 선발경호원은 정·첩보활동, 보안활동, 안전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가 이동 중이거나 행사장에 참석 중, 근접에서 수행하면서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각종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호위활동을 실시한다. 경호대상자를 24시간 수행한다고 하여 수행경호원이라고도 한다(美. SS, 1990).

박근혜 위해사건은 박 대표가 입구에서 단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잠시 경호원들과 틈이 벌어진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선거경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등 군중접촉이 많고 이에 따라 많은 돌발적 우발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시민이 많이 모이는 시내 변화로나 공원, 행사장 등에서 거리 유세를 할 때는 만취시민이나 특정 정당의 열성 지지자, 노숙자 등에 의한 비방이 야

기되기도 하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선거경호에 있어서는 표를 의식한 나머지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방어전략’만이 유효하다는 하소연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데 경호대상자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경우 유권자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이미지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비용 또한 주요 고려사항이어서 다수의 경호원 운용은 지양하는 편이며, 비서관 및 당관계자들에 의한 보호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경호의 목적인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박근혜 위해사례는 경호임무 수행의 가장 기본인 질서유지원칙 무시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경호의 원칙에 위배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물 보존의 원칙 위배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경호대상자를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는 원리로 본 사건에서는 일반 참석자인 시민들과 경호대상자와의 일정거리 공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대피우선의 원칙 위배

근접경호원은 우발상황이 발생되면 대적 및 제압보다는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방호 및 대피(Cover & Evacuate)는 근접경호팀의 가장 필수적인 기법으로서 우선 냉철한 판단력과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 기습공격시에는 1초 이내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한 뒤 신속하게 경호대상자를 방호하고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한다(염상국, 1997).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경호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한 직후 경호원에 의한 즉각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초간 경호대상자가 그 자리에 머물렀으며 당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은 위해상황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막는데 우선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호대형 미형성

도보대형은 경호대상자의 도보이동시 근접경호원들이 주변의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적방벽을 형성하여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호대형으로서 주위경계와 함께 중요한 근접경호 기법이다(이상철, 1997).

본 사례에서는 경호원에 의한 정상적인 도보대형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군중과 인접한 구역은 경호원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상에 오르는 동안(계단) 당 관계자에 의해 안내가 이루어졌고 군중지역(경호대상자 진행방향의 우측)은 경호원에 의한 대형이 형성되지 않았다.

도보대형은 경호원의 인원구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나 통상 가로대형, (역)삼각형 대형, 췌기형 대형, 마름모 대형, 오각형 대형, 일렬 대형, 사다리 대형 등으로 편성된다.

일반적으로 악수를 하는 등 신원이 불투명한 불특정다수인과 최근접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위해의 기회가 가장 많이 노출된다. 그러므로 경호원은 최근접에서 군중을 바라보며 경계 근무를 해야 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상한 행동, 시선, 손 등을 감시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경호원이 일시적으로 경호대상자와 밀착하여 측근에서 경호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중요한 것은 관계자 또한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선이 군중을 향해야 하나 경호대상자를 향해 안내하다가 위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일반 도보대형과 동일한 대형을 취하며 경호대상자는 항상 계단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일시적으로 우측 경호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대상자가 완전히 보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발상황 대응을 위한 SCE원칙 위배

우발상황이 발생되면 “S : 경고”에 의해 우발상황을 처음 목격한 경호원이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 내용을 긴급히 전파하여 경호대상자에 인접한 근접요원들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제2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C : 방호”에 의해 근접 경호원은 동시에 신속히 방벽을 형성하게 된다. 동시에 “E : 대피”에 의해 신속히 현장에서 경호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탈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표2-6> 우발상황 발생 시 ‘SCE’ 원칙

SCE원칙	내용
“S” (Sound Off)	“경고”란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 내용을 긴급히 전파하는 것으로서, 효과는 경호대상자에 인접한 근접요원들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제2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음
“C” (Cover)	“방호”란 우발상황을 처음 목격한 경호원이 “경고”하게 되면, 근접 경호원은 동시에 신속히 방벽을 형성
“E” (Evacuation)	“대피”란 위해 음모는 대부분 공범이 있으므로 신속히 현장에서 경호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탈시킴

자료 : 이상철(1997).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8(1): 15-16. 재구성

다섯째, 축소거리확보의 원칙 및 체위확장의 원칙 위배

‘축소거리확보의 원칙’은 우발상황 발생 시 공격의 위치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경호원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체위확장의 원칙’은 우발상황이 발생되면 경호원은 자신의 몸을 은폐 또는 엄폐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확장시켜 위협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연방벽효과와 동시에 범인의 시야를 가림으로써 방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는 당직자에 의해 근무 공간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경호원이 경호대상자 우측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아울러 축소거리확보의 원칙과 체위확장의 원칙이 근원적으로 성립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일직선의 원칙 위배

일직선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와 위협자 사이에 경호원이 위치하게 되면 3개체가 일직선을 이루게 되어 경호대상자가 인적방벽효과의 원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보호된다는 원칙으로서 다섯째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근원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일곱째, 평시 훈련체제 미비

경호는 한 순간을 위해서 운용된다는 말이 있듯이 경호원 및 경호조직은 평시 각종 위해요소를 고려한 평시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사건도 경호훈련의 부족에서 오는 대응이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예로 평시훈련을 통해 행사장에 도착하게 되면 경호대상차량은 즉각적으로 현장이탈 할 수 있도록 출발방향으로 대기해야 하나 이러한 점들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경호전문성이 무시된 경호를 제공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경호대상자가 위해를 당한 직후 침착한 응급지혈을 하는 등 경호대상자의 적절한 위기대응으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잘된 점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경호대상자의 상처부위를 살펴보면 상처부위의 0.5cm 위는 안면신경, 4cm 아래는 동맥이 위치한 지점으로 피습을 당한 상처부위가 천운을 받은 것도 있지만 경호대상자인 박근혜의 침착한 응급지혈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기병원인 10여분 거리의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의 이동과 적절한 응급치료는 본 사건에서 잘된 점으로 평가될 것으로 본다.

IV.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의 마련과 정비

1)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재검토

여러 위해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대책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전통적 위협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대립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는 9.11 테러 이후 UN 권고로 세계 각국이 법적으로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1년 추진된 법이 6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테러방지법(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전쟁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테러의 豫防·防止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테러로부터 국가 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목적)의 조속한 입법을 요망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높아지면서 각국이 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법적근거가 없어 테러 의혹 자금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고 호텔·백화점 등 민간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예방활동 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

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국정원, 2007).

공경호(公警護)에 대한 현실은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임무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 3부 요인,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공경호는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국회에서 ‘요인경호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의 체계적인 경호 프로그램이 시급히 확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한 민간경호의 발전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된 이후 1989년 기계경비업무내용의 신설, 1995년 경비지도사제도 신설과 신변보호업무 추가, 1999년 ‘경비업법’으로 법명 개정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있다.

민간경호원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권한의 남용, 비윤리적 기업행위, 우발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 문제 등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의 강화, 업체의 허가요건 강화, 경비업의 등급화 등 규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민간경호원의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미국의 주정부 국제위원회가 민간경호업의 면허와 규제에 관한 사항을 경력과 학력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과, 일본의 허가 갱신 제도를 두어 엄격하게 민간경호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관할경찰기관에서 범인의 경비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관해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허가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선진국 민간경호업의 규제수준으로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박주현, 2001). 다만, 규제의 강화는 곧 민간경호의 의욕 저하 및 불만의 표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침’과 ‘현실’사이의 정책적인 접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경호 육성 측면

1) 민간경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강화

현행 경비업법 규정에 의한 민간경호원들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정책에 따라 민간경비 3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됨으로써 여러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있으나 현행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인력경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보다는 이론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실무 중심적 교육과목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5개 업무별로 특성에 맞추어 해당업무 민간경호원 고유 직무를 분석하여 재정립되어야 한다.

2) 공경호의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경호처는 이제 대통령 경호만을 위한 역량 집중 단계를 넘어 그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안전관리대책의 총체적 로드맵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경호처의 협조로 체계적인 공경호 및 민간경호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면 경찰, 경호·경비 학계 및 민간경호업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동시에 경호에 대한 인식 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경호처는 공경호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외국의 경호기관과 교류하기도 하며, 국·내외의 범집행기관인 경찰기관이나 국가정보원 등의 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하며 선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통령 경호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좀 더 과학화, 체계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경호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호처가 일정 수준의 보안성은 지니되, 경호기법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민간경호에 기술 이전하는 등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된다면, 전국 50여개 경호관련학과는 물론 2,900여개의 경호업체에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140,000여명의 민간경호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 도입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은 ‘용역(用役)’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일’ 또는 ‘용역깡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전문적인 직무’임을 표방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경비업은 영세성에 기인하여 경비원 후생복지의 미약, 낮은 보수로 인한 높은 이직률 증가, 경비업의 전문성과 경비원 자질의 문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 문제, 시큐리티 운용시스템의 표준화 및 체계화 미약 등 여러 가지 질적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해결과제 들 중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경비업의 전문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자격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라 할 수 있다(김태민, 2006).

현행 한국의 시큐리티 관련 안전관리분야의 자격제도는 국가자격으로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이 유일하고, 경비원의 자격은 전무한 실정이다. 자격제도는 정부가 법적 보장체제로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특정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인적자원의 자격요건 유지,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 그리고 사회적 인식제고 등 그 효용이 상당히 지대하다.

경호원들의 사기양양은 물론 경호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경호원의 자격요건 유지,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 그리고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전국에 배치된 경호원들에게 주어질 자격제도가 요구된다. 경호원에게 주어질 자격은 업종에 따라 분류하여 시설경비요원, 호송경비요원, 신변보호요원, 기계경비요원, 특수경비요원 등의 업무별 자격을 설정하고, 등급은 1급, 2급, 3급 등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일본의 '경비원 검정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3. 운영적 측면 :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

1) 철저한 경호경비기획과 표준 경호업무매뉴얼 마련

경호운영에 있어서 시큐리티 컨설턴트의 전문적 기획능력과 시큐리티 시스템의 최적설계(경호경비기획)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시큐리티 컨설턴트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컨설팅 기법, CPTED 기법,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영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들을 적용시킨 설계서 즉 경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그에 따른 시큐리티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함으로써 효율적 경호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시큐리티 컨설턴트는 계획수립 시 경호원들에게 이러한 여러 기법들을 적용한 경호임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철저한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경호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경호업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표준 '경호업무매뉴얼'의 마련이다.

경호업무매뉴얼은 경호 업무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행동 지침서이다. 경호업무매뉴얼은 경호 업무 수행의 표준화, 전문화와 업무 품질도 향상을 위해 관리의 중점사항을 설정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까지 기술하고 표현하여 신입사원은 물론 경력사원까지 숙지하여 해당 경호업무의 품질도 향상은 물론 경호업무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서이며 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2) 운영상 경호 원칙 준수

경호의 특성상 위태상황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경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방법적인 요소가 바로 고도로 훈련된 경호전문가의 몸을 수단으로 한 경호기법과 원칙인 것이다.

경호의 원칙과 기법에는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자연방벽효과의 원리,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의 원리, 근접경호기법, 우발상황 발생 시 SCE원칙, 추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등 많은 경호기법들이 있으므로 경호기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경호운영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V. 결 론

세계적으로도 범죄와 테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화,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망한 가운데, 2006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중 지충호로부터 테러를 당한 피습사건은 한국 경호제도의 미비는 물론 국가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민간경호원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권한의 남용, 비윤리적 기업행위, 우발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 문제 등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의 강화, 업체의 허가요건 강화, 경비업의 등급화 등 규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실무 중심적 교육과목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5개 업무별로 특성에 맞추어 해당업무 민간경호원 고유 직무를 분석하여 재정립되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경호처는 이제 대통령 경호만을 위한 역량 집중 단계를 넘어 그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국가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안전관리대책의 총체적 로드맵 구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추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며,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호장비는 현대화·첨단화 되어야 경호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 경찰백서
- 국가정보원(2001). “뉴테러리즘의 特徵과 外國의 對테러 強化動向”.
- _____ (2007). “국정원, 테러방지법 조속한 입법 요망”. 11.22.
- 김두현(1996). 『경호학개론』. 서울: 쟁기.
- _____ (2002). 『경호학』. 서울: 엑스퍼트.
- 김태민(2005).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대학원.
- _____ (2006). “시큐리티기획사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4호. 한국스포츠리서치.
- 김태민·김동제(2006). “민간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제16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경호경비학회.
- 동아일보(2006). “되살아난 정치 테러” 5.22.
- _____ (2006). “박근혜대표 피습 사건 전후 상황 재구성” 5.21.
- _____ (2006). “박대표 피습-경찰 초동조치 시간대별 상황” 5.21.
- _____ (2006). “박대표 피습한 30분지나 경찰 도착-경찰 12분만에 출동” 5.22.
- _____ (2006). “박대표대표 피습에서 수술까지 시간대별 상황” 5.21.
- _____ (2006). “판결로 본 `정치 테러' 처벌 백태” 5.20.
- _____ (2007). “박근혜 유세 중 피습 1년-대선주자 대부분 경호인력없어” 5.21.
- _____ (2007). “昌 테러위협-대선주자 경호 비상” 11.13.
- 박주현(2001). 「공안행정의 민간부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대 대학원.
- 양재열(1995). 「경호의 기본적 이론에 관한 연구 : 국가원수 경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상국(1997). 「요인경호시 근접경호원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두석(2008). “라빈수상 위해사건 분석을 통한 경호적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211-232.
- 이상철(1997).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8집 제1호.
- _____ (2001). 『경호방법론』. 서울: 흥경.

이상철·김태민(2006).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 11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중앙일보(2006). “박근혜 대표 ‘불행 중 5가지 행운’” 5.24.

_____ (2006). “후보들 신변보호 비상” 5.21.

카메이 소토아키(이은섭·서성석 역)(1999). 『위기관리와 보험이론』. 부산: 세종출판사.
美, CID(1978), 『Protection service』.

美, SS(1990), 팜플렛 『Moments in History』.

「경비업법」 (개정 2008.2.29, 법률 제887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08.2.29, 법률 제8872호).

「대통령경호실법」 (개정 1999.12.31, 법률 제6087호), (개정 2005.3.10, 법률 제7388호).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3호).

ABSTRACT

A Method to Develop Security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n Dangerous Case

Yu, Hyung-Chang · Kim, Tae-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 method of current Korean security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shown in the performance of security work in relation to the terrorism, which is enlarging in the word, from various aspects.

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basic theory concerned to current Korean law concerned to security, principle and methodology of security, terror and new terrorism.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study by selecting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Park Geun-Hye case.

Through the study, the methods to develop Korean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legal asp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w concerned to terrorism prevention and important person securit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by revising Security Industry Act, which is a legal ground of private secu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reinforc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which is not still divided in detail from the aspect of private security cultiv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and enlarge market through Security Industry Act and make an effort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over security, which is devaluated in the society. From the viewpoint, national license about private security shall be adopted. The department of president security,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official security, shall transfer the advanced technology to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

Third, from the aspect of operation, the operation of security based on SCE principle, human shield principle, the nearest person's protection principle, body extension principle, linear protection principle and evacuation priority principle is required. Therefore, the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eventive security and thorough security plan shall be made for the operation.

Key Words : Security, Dangerous Case, Terrorism, Public law enforcement,
Private security